

\_\_\_\_\_



359 2012. 1. 10( )

.....


**공 고**

2012-26

-----2

**고 시**

2012-3

-----3

--	--	--	--	--	--	--	--	--	--	--

:

:

( 309-4071)

\_\_\_\_\_

**공 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월 1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2011. 12. 19. 시행)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 및 위원회 구성 및 직무 등을 조례로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하여 정함.

나.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해촉의 역할에 관하여 정비함.

다. 효율적인 기금운영과 회계관직명의 용어통일을 위해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2년 1월 29일 한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자우편 포함)

○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 의견접수처 :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33(구포2동 1124-1) 우편번호: 616-092

○ 이메일 : duswn98@korea.kr

○ 전화 : 051-309-4418 (팩스 : 051-309-4389)

**고 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24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고시기간 : 2012. 1. 10. ~ 2012. 1. 24.
2. 고시장소 : 북구 공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폐지) :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290번길 42외 1

		290	42	2012.1.9
		1064	48	2012.1.9

○ 도로명주소(부여) :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290번길 42외 4

		( )				
		258-1	290	42	2,900M	2010.02.03
		1997-2	9	8	90M	2010.02.03
		1048,1057-2	9	17	90M	2010.02.03
		504-4	76-18			2010.02.03
		951	1064	46	10,640	2010.02.03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01.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